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50
----------	-------

제출년월일 : 2020. 05.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 가.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식재료를 급식에 공급하도록 조달체계를 혁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나.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 증진
다. 도시와 농어촌간 지속 가능한 상생적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9조)
- 다. 공공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6조)
- 라. 공공급식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18조)
- 마. 보칙(안 제19조~제20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상위법령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0. 2. 13. ~ 3. 4. (제출된 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 3)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 원안 동의(위원회 신설 필요) [기획예산과-1220(2020.1.31.)]
- 4)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5)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20. 03. 24.)
- 7)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8) 비용추계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식재료의 공공급식 조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와 농어촌간 상생교류를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시설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급식을 말한다.
2. “도시와 농어촌간 상생교류”란 도시와 농어촌(이하 “도농”이라 한다) 간 상호 발전을 위해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산물·수산물·축산물(이하 “농수축산물”이라 한다) 등의 상품, 체험, 문화·관광 서비스 등의 교환, 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3. “우수한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농수축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생산물로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 나.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등 인증을 받은 식품
 - 라. 다른 지역의 농수축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수축산물
 - 마.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농수축산물
4. “공공급식센터”란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가 공공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물류·유통 및 교육·홍보 기능을 수행하는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5.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란 농어촌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문화 창달,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체험 교육 등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공공급식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3. 공공급식 지원대상, 지원규모, 추진방법, 활성화 및 확대 방안
4.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관리 방안
5. 도농간 직거래 방식의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방안
6. 공공급식 추진을 위한 농수축산물 생산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7. 도농상생 공공급식 및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대상기관이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도농상생 공공급식

제4조(지원대상) 공공급식의 지원대상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공공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공공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수행하는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도농간 체험·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위

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급식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공공급식 지원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대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현물로 지원할 경우에는 제17조의 공공급식센터를 통하여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지원금 목적 외 사용 금지
2. 도농상생 공공급식 관련 조사 및 서류 제출, 회계 검사
3. 지도·감독에 대한 협조 및 시정 조치의 이행
4. 공공급식의 질 향상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노력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기관의 명칭, 대상기관장의 성명 및 주소
2. 대상기관의 급식인원수 및 급식일수
3. 제17조에 따른 공공급식센터의 우수한 식재료 사용 시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으려는 금액
4. 그 밖에 공공급식을 위한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해당 지원금의 지급일 전날까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상기관의 장이 제7조의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3장 공공급식위원회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구청장은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급식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농수축산물 생산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공급식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2. 제17조에 따른 공공급식센터의 장
3. 농수축산물 생산자 조직에서 추천한 사람
4. 급식 관련 시민단체 및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학부모 등 공공급식시설 이용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식재료 유통 및 조달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영양사 및 조리사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급식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급식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공공급식센터

제17조(공공급식센터 설치·기능) ① 구청장은 공공급식에 우수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가공 및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급식센터(이하 “공공급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급식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대상기관의 수요에 따른 식재료 물류·유통 체계 확립
2.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저온유통체계 및 식재료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3. 원활한 수주·발주를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운영
4.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체험 및 교육사업, 홍보 지원
5. 그 밖에 공공급식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제18조(공공급식센터의 관리·운영) ①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을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공공급식센터의 장 : 공공급식센터의 운영 총괄 및 대외협력업무
 2. 관리요원 : 공공급식에 관한 물류·유통, 교육·홍보, 재무관리 등
- ③ 제1항에 따라 공공급식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 보조금의 지급, 공공급식센터의 위탁 운영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 가. 비용발생 요인 : 마포구 공공급식센터 위탁 운영에 따른 경비
- 나. 관련조문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공공급식센터 설치·기능)

2. 비용추계의 전제

- 가.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계획에 따라 향후 시비 지속적 확보
- 나. 비용추계기간 : 2020. 10. ~ 2024. 12. (51개월)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계속)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시비 보조금	230,664	633,040	746,996	756,921	767,136	3,134,757
	구비 보조금	66,830	169,053	174,140	179,375	184,770	774,168
	소계(b)	297,494	802,093	921,136	936,296	951,906	3,908,925
□ 총 비용(a-b)		-297,494	-802,093	-921,136	-936,296	-951,906	-3,908,925

※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인건비 : 마포구 공공급식센터 사무직 인건비(4명) (시:구=5:5)
(인건비 상승분 연도별 소요예산의 3% 반영)
- 시설 운영 및 사업비 : 시설운영비(공공급식센터 임차료, 기자재구입비, 공과금 등), 관리운영비(사무용품비, 차량비 등), 사업비(식생활교육, 홍보비 등) (시:구=5:5)
- 배송 인건비(4명), 카드수수료, 차액지원비, 차량구매비(사업시) (전액시비)

4. 재원조달 방안

- 매년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계획에 따른 시비 지원

5. 덧붙이는 의견

- 비용추계의 세출은 서울시 지원계획 등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정우열 (☎ 3153-8905)